

시행일 2022.01.01

더 청렴하게!
더 어업인 결사로!

해양수산부

수협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수협

2022년



시행일 2022.01.01

더 청렴하게!
더 어업인 결사로!

해양수산부

수협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2022년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약관

- 기본계약에서는 전손사고에 한해 보상하며, 분손사고에 대하여는 별도 특약(해상 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가입시 보상합니다.
-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 · 감김 · 유입으로 인한 손해 및 내적요인에 의한 기관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제1조(보험계약의 체결)

-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가입신청과 본회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본회가 보험가입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③ 본회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 ① 보험의 목적이 될 어선의 범위는 선체, 기관 및 의장품으로 합니다.
- ② 본회는 보험 목적인 어선이 보험기간 중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시설의 설비 및 이에 대한 검사를 필하고 자격있는 선장 및 기관장의 승선(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와 절차의 해태로 인하여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자는 사실상의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무자격자로 봅니다)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비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령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평가위원회의 결의를 얻거나 감정평가규정에 의한 장래보존 연수가 잔존한 어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목조선(목강선 포함)은 진수 후 15년

2. 강선, F.R.P.선, 기타 제1호 이외의 어선은 진수 후 25년

④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장기계류, 감척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2.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3. 최근 2년 이내에 어선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⑤ 선외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은 해당 선외기의 제작일자가 10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은 경우와 최근 1년 이내에 보링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제작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본회에서 정한 어선평가방법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외기의 제작일자 등은 본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계약 체결단위 및 보험가입금액의 안분비율)

① 이 보험계약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5톤미만의 연근해 어선으로서 보험가액 전액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은 어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을 각각 체결단위로 합니다.

③ 보험가입은 보험계약 체결단위 중 그 일부만을 따로 가입할 수 없으며, 선체와 기관 및 의장품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한 것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결단위에 대하여는 가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가액 등의 결정과 증감)

① 보험가액은 보험가입신청 당시에 산정된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저하게 부당함을 증명하거나 본회가 계약당시보다 현저하게 증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도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보험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증감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증감은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할에 의하여 계산한 미경과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합니다.

④ 보험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회는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시 변경된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가입비율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의 감소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변경된 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의 신청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을 승낙하기 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자기부담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적용할 자기부담금 및 최고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본회가 보험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자기부담비율과 최고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자기부담금 차감전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계약의 효력)

① 보험기간은 그 첫날의 0시부터 당해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까지로 합니다.

② 본회는 보험계약기간이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계약을 승낙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조건으로 본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납입일을 보험료의 납입일로 보며, 보험계약의 승낙의 통지는 보험증권의 교부로서 같음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기간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24시까지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본회 또는 본회가 지정하는 사무소에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 미납입 분납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손보험금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일이 경과한 분납보험료를 차감하여 수납합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약정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는 약정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최고한 납입기일까지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해지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보험계약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제23조(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보상하는 손해)

본회는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내수면포함)에서 해상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물 이외의 타 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 풍파의 이상(異常)한 작용과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입거 또는 상가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합니다.) 및 태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침몰·침수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① 본회는 보험기간 내에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험금과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보험금 : 전손·체결단위별 전손 보험금(사고에 따른 어선법상 임시검사수수료 포함. 단, 보험금 지급시에 한함)
2. 손해방지비용 : 제32조(손해방지의무)에 따른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소요된

필요비와 유익비

3. 임의구조비 :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해난을 당한 경우 구조할 의무를 가지지 않은 자가 이를 구조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조한 자에 대하여 지급할 비용

4. 해양오염방제비용 : 제10조(손해보상범위) 제6항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② 전손(어선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어 2월을 경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체결단위별 전손의 경우에는 해당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에서 제5조(자기부담금)에 따른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손해보상범위) 제2항에 따른 전손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⑤ 손해방지비용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요 비용에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이하 “보험가입비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다른 조항에 의하여 보상하는 보험금과는 별개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⑥ 임의구조비는 제10조(손해보상범위) 제4항에 따른 비용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어선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해양오염방제비용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용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어선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본회가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구조비 및 해양오염방제비용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등을 차감한 잔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34조(잔존보험가입금액)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⑩ 동일한 사고로 제3항에 의한 보험금과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임의구조비, 해양오염방제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손해보상범위)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전손과 체결단위별전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어선이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손해

- 로 인하여 원형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 2. 원형복구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요소적 부분에 손해가 있을 때
- 3. 손해정도가 기술적으로 수리복구가 가능하나 수선비(손해방지비용 및 임의구조비 포함)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4항에 규정한 의장품의 전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인양여부에 불구하고 선체와 함께 침몰된 때
 - 2.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거나, 그 연소로 인하여 사용 불능이 된 때
 - 3.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대손해로 인하여 원형으로 복구불능 상태에 있거나 수선비(손해방지비용 및 임의구조비 포함)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 다만, 조작과실 및 전기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품의 전손은 개개의 의장품을 단위로 하여 판정합니다.
- ④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의구조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보험의 목적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선박에 의하여 구조를 받아 최초의 안전 정박장소까지의 예인에 필요한 비용
 - 2. 구조자에 대한 보수
- ⑤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손해방지비용과 임의구조비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 1. 구조에 종사하는 경우의 희망이익 상실
 - 2. 사고에 대한 구조에 출동하였으나 구조불능의 비용
 - 3. 선원 기타 인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 4. 어획물, 연료, 어구, 기타 어선에 적재한 것을 방기(放棄)함으로 인한 손해
- ⑥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비용은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로 적하유, 연료유 및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1. 오염의 방지, 경감, 방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 2. 정부, 공무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해 오염의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제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오염에 의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
 - 2. 유류오염에 관한 협정에 의한 책임 및 비용(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 에 관한 국제협약)
- 3. 통상적인 운항, 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된 비용
- 4. 구조, 인양, 목적물 해체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 결과로 발생된 비용
- 5.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
- 6. 유류 오염이 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폐기물이 투기장소, 보관장소 또는 폐기시설로부터 유출, 배출되거나 그러한 우려 또는 존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및 비용

제11조(행방불명의 기간)

- ① 어선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어 2개월을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손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실종전후의 해황 또는 목격사실이 확인되어 침몰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실종 즉시 전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행방불명기간은 최후 통신일로부터 계산하고, 최후 통신일이 불명한 때에는 출항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합니다.
- ③ 본회는 행방불명된 어선이 현존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제12조(충돌·화재손해배상)

- ① 본회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의 보험금에 추가하여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 또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그 결과 타인의 선박 또는 적하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일방 또는 쌍방의 선박의 배상책임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차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비율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화재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책임제한권자의 책임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제한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책임제한권자가 그 책임제한 절차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책임제한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본회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그 배상을 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피보험자의 청구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총돌·화재손해배상의 보상범위)

① 제12조(총돌·화재손해배상)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총돌 또는 화재가 보험목적인 어선의 단독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당해 총돌 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배상하거나 부담하는 손해
 2. 총돌 또는 화재가 보험목적인 어선의 과실과 다른 선박의 과실에서 발생한 때에는 그 과실의 비율(과실의 경중을 판정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 과실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거나 부담하는 손해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선박에 적재된 적하가 아닌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다른 선박 승선원의 소지품 또는 휴대품 등 일체의 물품 포함)
 2. 다른 선박 또는 그 재산의 지면 또는 사용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3. 선원의 사망, 신체장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4. 관할관서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인양 또는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손해
 5. 항구시설 또는 부두위의 화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6. 총돌 또는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된 일체의 오염 또는 오탁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7.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손해

제14조(총돌·화재손해배상분쟁처리)

- ① 보험목적인 어선이 다른 선박과 총돌 또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그 결과 타인의 선박 또는 적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또는 분쟁의 중재를 타인에게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에 관해 본회가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비율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제12조(총돌·화재손해배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배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보상합니다.

제15조(오염위험방지방담)

① 보험목적인 어선이 보험사고에 의한 선박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오염의 위험 또는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취한 행위

로 인한 어선의 멸실 또는 손상을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선주 및 어선관리인이 오염의 위험이나 위협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취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에는 유류오염·오탁에 의한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현물보상)

-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본회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수 또는 현물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본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계도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용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어선이 피격, 포획, 나포, 억류되어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방사능 및 원자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5. 보험계약의 목적인 어선 또는 그 일부의 성질(변질, 경화 등 보험목적 고유의 성질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자연소모(부식, 마모 등 보험의 목적이 통상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전기적 사고(낙뢰 제외) 또는 하자(瑕疵)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
 6.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
 7.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시설의 설비 및 이에 대한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없는(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와 절차의 해태로 인하여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자는 사실상의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무자격자로 본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선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

8. 보험료의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당해 손해
 9.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항 및 제5항(별표 1 참조)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10.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 포함)와의 접촉·감김·유입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손해
 11. 내적요인에 의한 기관사고 손해
 12. 분손사고(체결단위별 전손 제외)로 인한 손해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1조(보험목적의 조사)의 피해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보험금 지급청구)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상황 측정이 곤란하게 된 때
 4. 제32조(손해방지의무)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무의 해태
- ③ 본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10/10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어선이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해난구조 및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에 종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회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3. 제1항 제7호 이외의 사고로서 자격없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승선하여 운항 또는 조업 중 발생한 손해
 4. 낚시 관련 운항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별표2 참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④ 본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20/10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어업에 관한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운항 또는 조업 중 발생한 손해
 2.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3. 제1항 제7호 이외의 사고로서 자격없는 선장 및 기관장이 승선하여 운항 또는 조업 중 발생한 손해
 4. 어선이 어업허가장상의 조업의 방법과 어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 중 발생한 손해.
 5. 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별표3 참조)를 위반하고 출항하여 발생한 손해

- ⑤ 본회는 제3항과 제4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의 20/10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⑥ 출어이외에 조업준비 등을 위해 항내에서 운항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본회는 제3항 제2호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계선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금 차감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⑨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자가 본회에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고지 내용 중 다른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유무 등 본회의 위험측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본회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제19조(보험계약자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실이 본회에 통지되어 보험증권에 승인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본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④ 본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을 임대하는 경우 어선의 임차인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동안의 보험계약자를 임차인으로 변경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목적의 양도)

-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미리 양수하고자 하는 자(미성년자일 때에는 그 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그 뜻을 본회에 통지하

고 본회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험목적의 양수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보험 목적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없는 한 당해 어선의 양수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1조(주소변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에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신청 당시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2.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행위가 있을 때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

제23조(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고지의무와 계약해지)

① 본회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타 고지내용 중 본회의 위험측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실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불실고지를 한 때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회가 보험계약 당시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고지한 사항이 불실이었던 것을 알았을 경우 또한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거나 고지한 것이 불실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해지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일지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제1항의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는 불실고지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은 본회가 해지의 원인을 알았을 때로부터 1개월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후 2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멸합니다.

제25조(위험변경증가 등의 통지의무와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본회에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본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을 같이하는 다른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3. 총톤수 또는 선체의 중요척도에 변경을 가져오는 개조를 하고자 할 때
4. 기관의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 때
5. 의장품의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 때
6.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7. 소속조합 또는 선명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8.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
9. 전 각호 이외에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본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본회의 제1항 각호의 사실의 발생에 관한 조사를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배서를 할 때에는 보험요율의 적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한하여 일할에 의하여 계산한 미경과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합니다.

⑤ 본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해지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일지라도 그 손해를 보

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제1항의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는 불실한 통지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보험계약의 소멸)

보험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멸합니다.

1.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보험목적의 멸실
2.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호에 의한 보험목적의 멸실
3. 보험목적의 해체

제27조(해지효력의 발생시기)

- ① 보험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7조(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통지”는 해지의 통지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주소변경의 통지의무)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보험계약시 주소를 불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본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달에 필요한 통상의 시일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제28조(휴향환급)

- ①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휴어·휴향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목적인 어선이 본회가 인정하는 항내, 휴향구역 또는 어선검사·수리소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향하거나 어선을 검사·수리하는 경우에는 일할에 의하여 계산한 휴향기간에 대한 보험료(국고·지방비보조 제외)의 60/100(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 등을 위한 경우로서 중앙회가 인정하는 어업자단체의 협약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별표4 참조)에 의거 체결한 어업자협약에 의한 휴어기간에 대하여는 80/10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항내 또는 휴향구역에서 휴향 중 어선검사·수리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휴향하는 것으로 보되, 이동에 소요된 기간은 휴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향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사전에 휴향사실을 본회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지 아니하고 휴향하는 경우

2. 본회가 인정한 항내, 휴향구역 또는 어선검사·수리소 이외의 장소에서 휴향하는 경우
3. 휴향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

본회는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0조(보험금 지급청구)

- ①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본회에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보험금지급청구서에 보험증권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지급청구서
 2.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3. 해난사고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서류(사고경위서, 사고사실증명원, 무전지 사본 등)
 다만, 신문보도 등에 의하여 사고사실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출입항신고서(선원명부 또는 승선확인증명서 포함)
 5. 해난심판재결서(충돌사고의 경우)
 6. 권리이전약정서(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의 경우)
 7.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 증권
 8. 감항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장 및 기관장 면허장,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장, 예인확인서(예인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9. 손해액 입증서류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 (손상부)사진, 매매계약서, 수리(불가)확인서등]
 10. 어선원부 말소증명(전손의 경우)
 11. 구조인양의 경우 인양관련 사진 및 인양확인서
 12. 경제적 전손 입증서류(구조비 또는 수리예상견적서 등)
- ② 본회는 사고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소요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서류가 본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한 사고사실증명(확인)서는 그 사고양상에 따라 그 업무를 주관하거나 또는 관계있는 관서, 법률에 의하여 그 업무의 취급을 인정받은 자가 발행하는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라야 합니다. 다만, 동 서류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목적의 조사)

보험의 목적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회는 그 손해액 및 사고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보험목적의 조사유별이 가능하도록 조치 또는 일시 다른 장소에 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비용과 관리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제32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방지 및 그 경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보험금 또는 본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중복계약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본회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체결된 다른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이하 “중복계약”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본회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본회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손해보전액 산출에 관하여 약정을 달리하는 중복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본회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총보험금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控除)한 잔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된 것으로 합니다.

손해보상후의 절차

제35조(보험목적에 관한 대위)

① 본회는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목적 및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회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본회의 모든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회가 부담할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③ 본회가 목적물을 취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제거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6조(제3자에 대한 대위)

① 본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합니다. 다만, 본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본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본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35조(보험목적에 대한 대위) 제2항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7조(보험금의 환수)

① 본회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더하여 환수합니다.

1. 보험사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본회는 제1항, 제11조(행방불명의 기간) 제3항, 제24조(고지의무와 계약해지) 제4항 및 제25조(위험변경증가 등의 통지의무와 계약해지)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신청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한 비용과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제38조(보험계약 내용의 교환)

본회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법인과 상호 정보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종목, 가입내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39조(담보 등의 설정 승인)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매도(양도)담보를 설정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보험계약상의 분쟁의 처리)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보험계약 관계자와 본회 사이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본회에 설치되어 있는 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지급청구권 및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제42조(보험약관의 변경)

본회가 보험약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한 현존하는 보험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43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 ① 이 보험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제보험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합니다.
- ②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회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특별약관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특별약관

제1조(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특약체결)

- ① 보험계약자는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계약(이하“기본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에는 기본계약의 내용을 제한 또는 확장하는 다음의 특약을 기본계약에 첨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본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그 기본계약에 첨가하여 체결된 특약도 동시에 무효, 해지 또는 소멸됩니다.
- ③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을 따릅니다.

1. 어구특약

제1조(어구특약)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의 어선의 사용어구에 대한 손해를 기본계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기본계약의 어선에 적재한 어구로 합니다. 다만, 당해 어구는 이를 적재한 어선과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손해의 보상)

- ① 본회는 보험의 목적인 어구가 이를 적재한 어선과 함께 전손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할 책임을 지며, 이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특약보험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는 기본계약과 별개이며, 기본계약 또는 다른 특약에 의한 손해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4조(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어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본회에 통지하여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배서 되지 아니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본회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어획물보상특약

제1조(어획물보상특약)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인 어선의 어획물에 대한 손해를 기본계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기본계약의 어선에 적재된 어획물로 하며, 그 보험가액은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운반선은 30/100) 이내로 합니다.

제3조(손해의 보상)

- ① 본회는 보험의 목적인 어획물이 이를 적재한 어선과 함께 전손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할 책임을 지며, 이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특약보험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1. 보험목적인 어선이 조업 중 어획한 어획물
 2. 보험목적인 어선이 양륙항으로 운반하기 위한 어획물 및 그 제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안전조업규에 보고한 일일 어획량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어획물에 대하여 입항예정지의 경락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어획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에 1항차당 평균조업일수에 대한 당해 출어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는 기본계약과 별개이며, 기본계약 또는 다른 특약에 의한 손해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제1조(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 ① 기본계약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분손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계약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손해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보험금은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계약약관 제5조(자기부담금)에 따른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차감전 보험금은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차감전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자기부담금보상특약

제1조(자기부담금보상특약)

- ① 본회는 기본계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특별약관 제3절(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약관 제5조(자기부담금)에 따른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자기부담금보상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
 2.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보험금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1】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낙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별표3】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의 기준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다.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출항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모든 어선 출항 금지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 로의 이동 및 항 ·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 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 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태 풍으로 인한 풍 랑주의보 발효시 에는 30톤) 미만 어선 출항 금지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 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 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 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3. 폭풍해일 주의보 폭풍해일경보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 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 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 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별표4】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